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의 거래비용적 분석

: 위해정보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지광석·김태윤

요약

국제무역이나 전자상거래의 증대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소비자제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비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품 안전과 관련된 기준이나 관리 방식 및 제도 등에는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세계적으로 공통기준 및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위해정보 수집 및 평가 시스템인 위해정보시스템도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양태와 성격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위해정보시스템을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의 구성요소로서 파악하고,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위해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즉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의 분석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관점이 어떤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거래비용의 정의와 유형 및 위해정보시스템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인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모델"을 수립하였다. 위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위해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정책의 달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배경인식에 따른 것이다. 동 모델에 입각하여 미국, 일본, EU, 한국 등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의 특징을 재해석한 바, 선진국의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은 위해정보 단계별로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거래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위해정보시스템 역시 위해정보 단계별로 시스템 사용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유형을 확인·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을 거래비용의 틀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와 관련하여 거래비용에 입각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소비자안전, 거래비용, 위험, 위해, 위해정보, 위해정보시스템, 정책도구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 비교분석 : 거래비용적 해석을 토대로
- IV. 결론 : 함의 및 한계

* 본 논문의 기초개념 및 방법론은 지광석의 박사학위논문 일부(제5장)에서 비롯되었으며, 2011년 한국제품안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I. 서론

최근 국제무역의 증가, 전자상거래의 역할 증대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소비자제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비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¹⁾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물론,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에도 소비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다. 이렇듯 대부분의 제품은 잠재적으로 위해(injury)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OECD, 2010).

그러나 제품 안전과 관련된 기준이나 관리 방식 및 제도 등에는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세계적으로 공통기준 및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가마다 정의, 정보 분류 방식, 문화, 규제와 기준의 차이로 인해 정보의 수집과 평가방식이 상이하다(OECD, 2010). 따라서 위해정보 수집 및 평가 시스템인 위해정보시스템도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양태와 성격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소비자안전 정책도구로서 국내의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의 특징을 고찰하고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위해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의 분석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관점이 어떤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래비용의 정의와 유형 및 위해정보시스템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에 본 연구의 분석틀인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 모델에 입각하여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위험, 위해 및 위해정보의 개념

산업의 발달,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현대 사회는 여러 유형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Beck (1997)은 일찍이 “선진화된 근대성에는 부의 사회적 생산에 위험의 사회적 생산이 체계적으로 수반된다.”면서 위험사회의 필연적 도래를 주장한 바 있다. 위험사회에서는 위험을 통제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며, 여기서 안전 개념은 위험의 감소, 나아가 위험의 완전한 부재를 지향한다(노진철, 2004 ; 여차민, 김태운, 2009).

위험과 안전의 두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시각에는 단절적 관점과 연속적 관점이 있다. 단절적 관점은 Beck의 위험-객관주의적 시각으로서 위험을 과학기술의 진보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생된 우리들의 인식과 평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이 다량 생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위험은 제거·부정되거나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eck, 1997 ; 여차민, 김태운, 2009).

이와는 달리 연속적 관점은 Douglas와 Wildavsky의 위험-구성주의적 시각에 해당되는데, 위험의 객관적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위험은 상대적인 것이며 위험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서는 안전을 구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여차민, 김태운, 2009).

위험(risk)의 정의에 있어서 Adams(1995, p.300)는 위험을 “미래 사건의 확률과 효용의 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이때의 “미래는 불확실하

1) EU에서는 위해가 심혈관계 질환, 암, 호흡기 질환에 이어 네 번째로 중요한 사망원인에 해당된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는 사고와 위해가 제1의 사망원인이다. EU 27개 회원국에서 매년 25만 명 이상이 사고 또는 폭행으로 생명을 잃고, 매년 6천만 명 이상이 위해로 인해 의료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중 약 7백만 명이 입원을 하고 있다(IDB 홈페이지).

며 주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또, Kaplan & Garrick(1981)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어떤 종류의 손실(loss) 또는 피해(damage)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은 위험의 내재적 속성의 하나로 파악된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위험요인을 낮추거나 안전장치(safeguards)를 늘림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위험은 결코 “0”이 될 수는 없으며,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Risk is never zero, but it can be small). 단순한 인지(awareness)도 ‘안전장치’에 포함되므로 위험의 인지는 위험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위험은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며, 주관적이다(Kaplan & Garrick, 1981).²⁾ 이와 같이, 위험은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적절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할 때 높아지게 된다. 또한, 어린이와 같은 특정 집단은 안전 지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더욱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OECD, 201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위험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피해(손실 또는 위해)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상대적·주관적 개념이다.

유사한 개념인 ‘hazard’에 대해, Kaplan & Garrick(1981)은 “위험(danger)의 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risk’는 “손실(loss) 또는 위해(injury)의 가능성”, “그러한 손실의 확률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hazard’는 단지 요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risk’는 그러한 요인이 실제 손실, 위해, 또는 어떤 형태의 피해로 전환되는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해(injury)는 위험(risk)의 가능성이 실제 피해

로 발생한 것이므로 개념 상 양자는 구분된다.

그러나 실무적인 개념인 ‘위해정보’에서 ‘위해’는 미래의 재산적 ‘손실’(loss) 또는 생명·신체상의 ‘위해’(injury)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위험’(risk)은 물론 현재 발생한 ‘손실’(loss)과 ‘위해’(injury)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국내의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위해정보’를 “물품, 서비스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로 정의하여, ‘위해’ 또는 ‘위험’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³⁾

2. 거래비용이론

신제도경제학의 한 분과인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경제 및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핵심적인 도구로써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제도를 하나의 내생변수로 취급하여 제도에 따라 거래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거래비용이 드는 세계에서는 제도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다(황준성, 2000).

거래비용경제학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쌍방간, 다자간에 이루어지는 시장과 조직에서의 거래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이론으로 한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 장기간의 계약을 통한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도구로 거래비용을 이용하고 있다(황준성, 2000). 이와 같이,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은 거래비용경제학(TCE)에서 “불완전한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의 거래에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2) 위험은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 달려 있는데, 이는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위험에는 ‘절대적 위험’(absolute risk)도 있으나 절대적 위험은 결국 누군가의 인지된 위험으로 귀결된다. 질적으로 위험은 당신이 하는 것, 아는 것, 모르는 것에 달려 있다(Kaplan & Garrick, 1981).

3) 일본의 경우에도, 전국의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가운데 제품, 서비스, 시설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해가 되는 사고를 ‘위해’, 생명이나 신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사고를 ‘위험’으로 보아 모두 ‘위해정보’로서 수집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2009a).

하는 비용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경제문제를 분석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Williamson, 1985 ; Saleh, 2004).

거래비용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학과 내에서도 학자 간에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국외 문헌을 중심으로 거래비용의 정의 및 유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거래비용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해외의 주요

문헌을 보면, 시장에 대한 기업(위계) 조직의 출현의 배경, 거시적인 경제발전과의 관련성, 또는 재산권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 등 매우 다양한 해석의 목적을 위해 거래비용의 개념이 활용되었지만, 대부분의 문헌이 시장을 통한 거래에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거래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결국 시장거래를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표 1> 거래비용의 정의 및 유형

학 자	정 의	유 형
Coase (1937)	• 시장비용 - 가격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비용	탐색과 정보비용, 상담과 의사결정비용, 감시와 이행비용
Arrow (1969)	• 경제체제를 운영하는 비용 - 시장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봉쇄하는 비용	배제비용, 통신 및 정보비용, 불균형비용
Dahlman (1979)	•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원의 손실	탐색 및 정보비용, 협상 및 결정비용, 확인 및 집행비용
Williamson (1985)	• 경제체도를 운영하는 비용으로서 마찰(friction) 없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용	• 사전적 거래비용 : 합의사항 작성, 협상, 이행 보장 비용 • 사후적 거래비용 : 부적합 조정, 협상, 분쟁 관련, 보증 비용
Matthews (1986)	• 계약 이전의 성사 비용 + 계약 이후의 감독 및 이행 비용	계약 성사 비용, 계약 감독 및 이행 비용
North (1990)	• 개인들이 재산권을 정의·교환하고 집행하는데 수반되는 비용	• 사전적 거래비용 : 정보탐색(획득), 교섭, 계약체결 비용 • 사후적 거래비용 : 감시(감독), 계약 집행 및 손해배상청구, 재산권 보호 비용
Griesinger (1990)	• 기회주의에 따르는 비용	협상비용, 부적응비용, 감시비용
Allen (1991)	• 재산권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비용	
Eggertsson (1994)	• 개인들이 경제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교환하고 소유권에 대해 배타적 권한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	정보탐색 비용, 협상비용, 계약체결 비용, 감시비용, 계약이행 및 감독비용, 재산권 보호 비용
Dahlstorm & Nygaard (1999)	• 경쟁가격, 거래제품과는 별개로 달라지는 경제적 교환과 관련된 비용	협상비용, 부적응비용, 감시비용
Saleh (2004)	• 계약 체결의 장애물	거래 당사자 탐색 비용, 거래 대상 상품·서비스의 특징·품질 측정비용, 계약조건 협상비용, 감시체계 구축비용, 계약이행 비용

자료 : 지광석, 김태윤(2010)

점에서는 같은 입장임을 알 수 있다(지광석, 김태운, 2011).

3. 위해정보시스템의 거래비용적 해석

위해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입게 되는 위해 사례를 신속히 수집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이다.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해정보의 교환(거래)에 있어서도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위해정보시스템은 위해정보의 효율적인 교환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야기할 것이며, 이러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위해정보시스템의 바람직한 속성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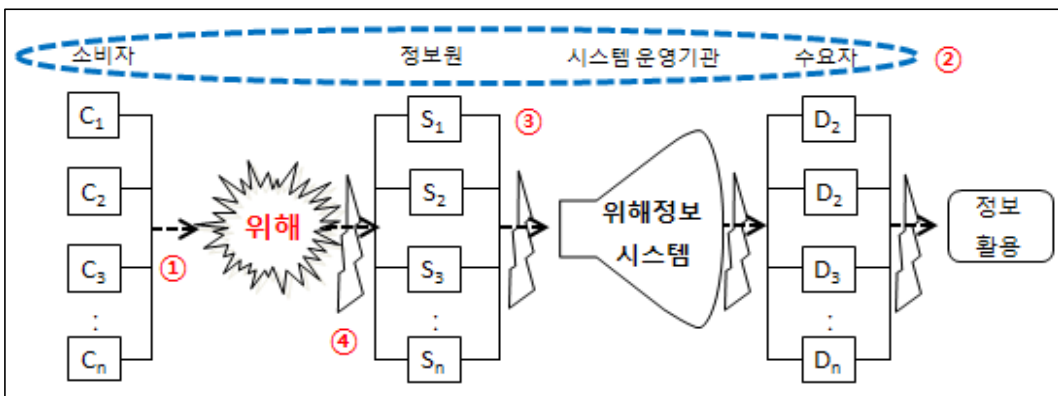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이 위해정보를 교환 및 거래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담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해정보시스템의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1) 위해정보시스템의 메커니즘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시스템을, ① 위해정보의 흐름, ②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 ③ 사용자들의 주요 과업(tasks)과 활동(activities), ④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즉, 거래비용) 등의 서브시스템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선, 위해정보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를 체계적으로 도해하면 <그림 1>의 위해정보시스템의 메커니즘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정보의 흐름의 측면에서 위해정보는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생산, 유통, 소비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위해를 당하면 이와 관련된 정보가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수집되고(생산), 위해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가공 및 전파되어(유통) 여러 수요자에 의해 활용되는(소비)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사용자가 위해정보시스템에 관여하게 된다. 즉, 정보생산단계에서 위해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신고하는 소비자, 응급실 환자를 통해 위해정보를 확인·입력하는 병원, 정보유통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서브시스템 : ① 정보의 흐름, ② 사용자, ③ 사용자의 활동, ④ 활동 방해요인(거래비용)

<그림 1> 위해정보시스템의 메커니즘

분석·가공하고 전파하는 시스템 운영기관, 정보 소비단계에서 전파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정부, 유관기관, 소비자, 개인, 기업 등의 정보소비자가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해당된다. 각 사용자들은 위해정보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고유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에 해당된다.

정보의 단계에 따라 위해정보시스템에 관여하는 사용자와 그들의 주요 활동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2)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 모델

여기에서는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 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모델의 수립에 있어서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유형을 확인·정의하기 위해 정보 단계별로 각 사용자들이 수행하는 활동과 그러한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분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① 위해정보의 단계 중 어느 단계인가?
- ②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나 기여자는 누구인가?
- ③ 그 단계에서 사용자의 주요 과업(tasks)과 활동(activities)은 무엇인가?
- ④ 그러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요

인(‘거래비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과정을 예시해보면, 먼저 정보생산단계(①)에서의 과업인 위해 신고(병원)(③)와 관련하여 세부 활동은 소비자(②)의 위해사실 진술(③), 병원 담당자(②)의 질의(③), 환자(②)의 응답(③)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각 사용자의 이러한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 적절한 거래비용 명칭을 부여하면 소비자의 위해사실 진술비용(④), 병원의 정보생산 협조요청비용(④)과 정보 수집비용(④), 소비자의 정보생산 협조비용(④), 프라이버시비용(④)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립된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 모델을 예시하면 <표 3>과 같다.

여기서, 거래비용은 경제학에서 여타의 비용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의 개념이며, ‘위해정보의 교환 또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다. 따라서 위해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 설비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인 시스템 구축비용, 병원 지원비용, 기관 간 협정비용, 추적조사비용, 정보 검증비용, 정보 분석·가공비용, 통계처리비용 등은 거래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들은 위해정보의 효율적인 교환 및 거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정부부문이 감수해야 하는 ‘투자비용 또는 생산비용’의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표 2> 위해정보의 단계와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주요 활동

단 계	사 용 자	주요 활동
생 산	소비자, 기업, 병원·소방서 등	위해 직접 경험·입력(신고) 위해정보 신고·입력
유통	시스템 운영기관	위해정보 제공·전파·공유 시스템 사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협력
소 비	정부·유관기관, 소비자, 개인, 기업 등	위해정보 획득·이용(활용)

* 본 연구에서 ‘소비자’는 위해(피해)를 입은 소비자, ‘개인’은 그 외에 다수의 국민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양자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표 3〉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 모델(예시)

단 계	주요 과업	세부 활동	사용자	거래비용	
생 산	위해 발생	위해 관련 기억 유지	소비자	기억유지비용	
		사고신고 필요성 인지	소비자	신고 필요성 인지비용	
		증거자료 수집, 보관	소비자	증거자료 확보비용	
	위해 신고 (시스템 운영기관)	신고처 탐색	소비자	소비자	신고처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	소비자	소비자	시스템 탐색비용
		위해사항 입력	소비자	소비자	위해사항 입력비용
			소비자	소비자	시스템 신뢰비용(보안/안전성)
		답변 회신	소비자	소비자	회신 대기비용
	위해 신고 (기업)	위해사실 신고, 접수	소비자	소비자	위해신고비용
		위해 원인규명	소비자, 기업	기업	위해 원인규명 비용
		위해정보 정부보고	기업	기업	위해정보 보고비용(손해 포함)
	위해 신고 (병원)	위해사실 진술	소비자	소비자	위해사실 진술비용
			병원 담당자 질의	병원	정보생산 협조요청비용
		환자 응답	병원	병원	정보수집비용
			소비자	소비자	정보생산 협조비용
	위해정보 제출	위해정보 입력	병원	병원	정보입력비용
			병원	병원	주의유지비용
		위해정보 제공	병원	병원	부가적 업무비용
			병원	병원	정보제출비용
	정보원 관리	정보 수집, 취합	운영기관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유통	위해정보 제공·전파	정보공유	운영기관	운영기관	정보공유비용
	위해정보 획득	정보제공기관 탐색	정부, 개인, 기업	정부, 개인, 기업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	정부, 개인, 기업	정부, 개인, 기업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	정부, 개인, 기업	정부, 개인, 기업	필요정보 획득비용
		정보에 대한 이해	정부, 개인, 기업	정부, 개인, 기업	학습비용
정보에 대한 신뢰	정부, 개인, 기업	정부, 개인, 기업	정보 신뢰비용		
소 비	위해정보 인지	위험 인지	개인	개인	위험 인지비용
		위험제품 확인	개인	개인	위험제품 확인비용
		안전성 비교	개인	개인	안전성 비교비용
	연구자료 획득	위해관련 연구자료 획득	개인	개인	연구자료 획득비용
	결함제품 조치	제품 결함여부 확인	기업	기업	결함 확인비용
		제품 결함에 대한 판정	정부	정부	의사결정비용
		리콜 등 조치	기업	기업	결함제품 조치비용
			소비자	소비자	피해구제비용
		피해구제 및 손해배상	소비자	소비자	동일·유사피해 소비자 조직화비용
	제도 보완	정책수립(안전기준 개발)	기업	기업	협상비용
정부			정부	정책수립비용	

III.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의 비교분석 : 거래비용적 해석을 토대로

1. 분석틀

본 연구는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이 위해정보를 교환 및 거래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담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해정보시스템의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을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으로 정의하고, ① 위해정보의 흐름(단계), ②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 ③ 사용자들의 주요 과업과 활동, ④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요인(즉, 거래비용) 등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표 3>의 위해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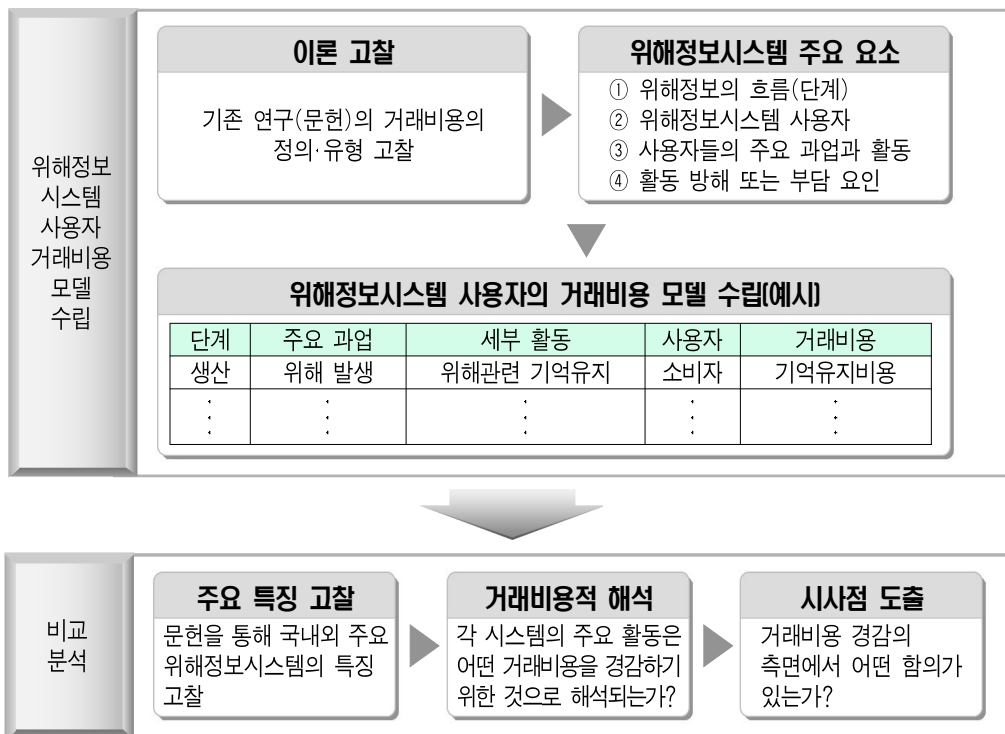
사용자의 거래비용 모델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는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의 내용과 특징을 거래비용 모델에 입각하여 해석함으로써 각국이 사용자들의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위해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및 분석틀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2.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

분석 대상은 각국을 대표하는 위해정보시스템으로서 미국의 NEISS, 일본의 사고정보데이터뱅크시스템, EU의 IDB와 RAPEX, 한국의 CISS



<그림 2> 연구의 흐름 및 분석틀

를 중심으로 한다. 각국의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의 현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보시스템의 최근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거래비용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1) 미국의 위해정보시스템

미국은 독립규제위원회⁴⁾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국립위해정보처리기구(National Injury Information Clearing House)를 설립하여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사망·상해의 예방 관련 통계와 정보를 다양한 정보파일로부터 취합하여 전파하고 있다(OECD, 2010).⁵⁾ CPSC는 이렇게 수집된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면서 포괄적인 데이터에 기해 규제 조치를 취한다. 다양한 정보파일 중 하나인 NEISS는 미국전역의 병원 중에서 통계적으로 선택된 응급실로부터 제품과 관련된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국립전자위해감시 시스템이다(한국소비자원, 2009a).

여기에서는 NEISS를 중심으로 미국의 위해정

(1) 정보생산단계

미국은 응급실 위해정보의 생산에 있어서 NEISS 조정관(coordinator)이 응급실 기록을 검토하고 2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원회 분석사가 위해와 관련된 제품 유형에 대한 지식을 신속히 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기술표준원, 한국규제학회, 2009).⁶⁾ 결과적으로, 운영기관의 정보 수집비용과 정보소비자의 정보 신뢰비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 감시수준, 특별 응급실 감시활동 수준, 전화추적 조사와 현장조사의 추적조사(follow-back investigation) 수준의 네 단계에 걸친 수준별 정보 수집을 실시하고 있다.⁷⁾ 추적

<표 4>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 현황 개요

국 가	위해정보시스템	관할기관 및 성격	주요 정보원
미 국	NEISS	CPSC(독립규제위원회)	응급실 정보
일 본	사고정보데이터 뱅크시스템	소비자청(정부기관)	PIO-NET위해정보 & 각 기관 데이터
E U	EU-IDB RAPEX	DG SANCO(유럽위원회공공보건소비자보호국) EU 집행위원회	응급실 정보
한 국	CISS	한국소비자원 (준정부기관)	응급실 정보 & 1372 소비자 상담정보

자료 : CPSC(2000), 소비자청·국민생활센터 홈페이지, IDB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2009a)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

4) 독립규제위원회는 보통 입법부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다수의 의원(commissioners)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초당파성과 임기는 최대한 보장된다(김종석, 김태운, 2004).

5) 국립위해정보처리기구의 정보파일은 NEISS, 사망진단서 파일, 심층조사 파일, 위해/잠재적 위해 사고 파일(핫라인, 뉴스기사, 검서관 보고서, 편지 등)로 구성된다(OECD, 2010).

6) 병원 응급실을 통한 정보생산은 i) 환자 방문 및 응급실 요원의 정보 수집, ii) NEISS 조정관의 응급실 기록 검토 및 입력, iii) 위원회 송부의 절차를 거친다. CPSC는 각 병원에 위해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PC 및 전화회선을 대역하고 정보입력요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데 매년 약 3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 병원에서 제공한 위해정보에 대한 보상은 각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평균 건당 3달러 정도를 지급한다(기술표준원, 한국규제학회, 2009).

7) 지속적 감시수준은 확률 표본을 구성하는 100개의 병원 응급실에서 처리되는 제품관련 위해를 계속적으로 감시한다. 특별 응급실 감시활동은 응급실 기록으로부터 매일 밤 제한된 양의 추가 자료가 추출되어 지속적인 감시체계의 부분을 구성한다. 감시 사례의 1% 미만이 추적조사를 위해 선정되어 왔는데, 특정 CPSC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추적조사 사례의 90%가 전화조사를 통해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나머지 10% 정도는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세부사항을 확보한다(CPSC, 2000).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위해의 유형분류, 위험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위해 공산품에 대한 식별과 안전기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을 가능케 한다(CPSC, 2000). 특히, 현장조사는 촬영, 실험연구, 인터뷰, 전문가 의견 등의 절차를 통해 세부 정보 획득을 가능케 하므로 소비자의 위해 원인규명비용과 위험제품 확인비용, 기업의 결함 확인비용, 정부의 정책수립비용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법에서는 민간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위해요인을 발견한 즉시 CPSC에 위해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⁸⁾ 이는 법·제도를 통해 운영기관의 정보 수집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2) 정보유통단계

미국은 2011년부터 새로운 제품안전 데이터베이스(New Publicly Available Database)에 소비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기업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답변 및 의견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CPSC, 2011).⁹⁾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신고처 탐색비용, 피해구제비용, 위험제품 확인비용, 그리고 사업자의 결함 확인비용, 협상비용 등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CPSC는 타 연방기관과의 기관 간 협정을 통해 1978년부터 시스템을 공유해 오고 있다.¹⁰⁾ 이러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CPSC는 2000년에 소비자제품 관련 위해 외에 모든 위해(all injuries)를 수집하기 위해 주요 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연구자들과 타 연방기관에게 훨씬 더

중요한 연구 도구가 되었고, 정부기관, 제조업체, 연구자, 변호사, 일반 대중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CPSC, 2000). 결과적으로, 운영기관의 정보 수집·공유비용과 정보소비자의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정보소비단계

위해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보도 자료로부터 세부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도 자료는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 제품에 대한 세부 연구는 기준 개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CPSC, 2000). 또한, NEISS는 미국과 그 영토 내의 응급실을 갖춘 모든 병원의 확률 표본이므로 병원 응급실에서 처치되는 국가 위해 추정치를 제공한다(CPSC, 2000). 결과적으로, 개인의 위험 인지비용, 위험제품 확인비용, 안전성 비교비용, 연구자료 획득비용, 피해구제비용 등과 정부의 정책수립비용 등은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PSC는 제품 관련 모든 사고사례를 수집·분석한 DB를 토대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규 위험요소와 결함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술표준원, 한국규제학회, 2009). 또한, CPSC는 독립규제기관으로서 세부 연구 및 통계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 규제 수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

8) 소비자제품안전법(제15조, 제37조)에 의하면 제조업체, 수입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등 민간업체는 제조·판매하는 제품이 강제/임의표준과 규정 미준수, 안전위해 우려 제품, 안전장치 미작동, 경고표시 미흡 등이 발견되는 즉시 24시간 이내에 CPSC에 보고하여야 한다(기술표준원, 한국규제학회, 2009).

9)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2008년)에 따라 CPSC는 2011년 3월부터 동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이 그들 제품과 관련된 피해보고서에 대해 답변하거나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소비자들에게 CPSC 제품안전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접근과 제품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수단을 제공한다(CPSC, 2011).

10) 예를 들어, 국립상해예방통제소(NCIPC)의 화기사고,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근로관련 사고,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에어백 상해 사고, 식의약청(FDA)의 의료기구 사고, 질병통제센터(CDC)의 화기사고, 법무부 통계국(BJS)의 고의적 상해 사고, 환경보호청(EPA)의 농약 상해 사고, 주택도시개발부의 이동주택 상해 사고 등에 대한 특별 감시 자료를 공유한다(CPSC, 2000).

다. 따라서 개인의 위험 인지비용과 위험제품 확인비용, 정부의 정책수립비용 등은 상당 수준 경감될 수 있다.

이상, 미국의 위해정보시스템의 특징을 거래비용적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성청이 수집한 위해정보를 소비자청과 공유하는 '위해정보수집체계'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안전법'의 제정과 '소비자청'의 신설(이상 2009.5월) 및 '사고정보데이터뱅크 시스템'의 개시(2010.4월)로 위해정보수집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2) 일본의 위해정보시스템

(1) 정보생산단계

일본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부에 사고정보를 직접 보고하는 '사고정보 수집체계'와 품목별 부

이 단계에서는 위해정보 수집에 있어서 민간 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표 5> 미국의 위해정보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거래비용적 해석

단계	주요 과업	세부 활동	사용자	경감 예상 거래비용
생산	위해정보 제출	NEISS조정관이 응급실 기록 검토 및 24시간 내 입력	정부, 개인, 기업	정보 신뢰비용
		위원회 분석사가 관련정보 신속 제공	운영기관	정보수집비용
	정보원 관리	수준별(4단계) 정보수집 실시	소 비 자	위해 원인규명 비용, 위험제품 확인비용
			기 업	결합 확인비용
		정 부	정책수립비용	
	위해 신고	위해요인 발견 즉시 민간업체가 CPSC에보고(소비자제품안전법)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유통	새로운 제품안전 DB(New Publicly Available Database) 구축·운영	소비자가 직접 피해보고서 제출	소 비 자	신고처 탐색비용
			기 업	결합 확인비용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기업의 답변 및 의견 게재	소 비 자	피해구제비용, 위험제품 확인비용
	기 업		협상비용	
위해정보 제공·전파	시스템 공유 (기관 간 협정)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정보 공유비용	
위해정보 획득	모두가 이용 가능토록 정보 공유	정부, 개인, 기업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소비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	단순 보도자료에서 세부 연구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 제공	개 인	위험 인지비용, 위험제품 확인비용, 안전성 비교비용, 연구자료 획득비용, 피해구제비용
			정 부	정책수립비용
			정 부	
		국가 위해 추정치 제공 (통계적 타당성 확보)	개 인	연구자료 획득비용
	위해정보 인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개 인	위험 인지비용, 위험제품 확인비용
제도 보완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CPSC	정 부	정책수립비용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고정보수집제도를 통해 “중대” 제품사고의 경우 제조·수입업자가 소비자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비중대” 사고의 경우에는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에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기술표준원, 2011).¹¹⁾ 또한, 일본은 고객으로부터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자체 수집하는 유통업자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통해서도 제품사고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기술표준원, 2011).¹²⁾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운영기관의 정보 수집비용, 개인의 위험 인지비용과 위험제품 확인비용, 소비자·기업의 위해 원인규명 비용, 결함 확인비용, 정부의 정책수립비용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시켜 줄 수 있다.

정보생산의 또 다른 채널로서 PIO-NET(전국 소비생활정보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¹³⁾ 또한, 2009년 5월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하여 중대사고나 소비자사고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각 기관의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등(고형석, 2009),¹⁴⁾ 운영기관의 정보 수집비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시도

를 한 바 있다.

(2) 정보유통단계

일본은 2010년 4월부터 소비자청과 독립행정법인¹⁵⁾인 국민생활센터가 제휴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 PIO-NET의 위해정보 및 국가 각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사고정보 데이터뱅크시스템’¹⁶⁾을 운영하고 있다.¹⁷⁾ 그 결과, 사고정보의 공유와 통합으로 더욱 체계적인 사고의 추세파악과 분석이 가능해짐으로써 운영기관의 정보 수집·공유비용, 정보소비자의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연구자료 획득비용과 정부의 정책수립비용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정보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은 수집된 정보, 기타 소비자사고등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당 정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또, 정리된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생활센터에 제공함과 더불어 국회 및 소비자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

- 11) 구체적으로, 소비자청에 의한 중대 제품사고정보 보고·공표제도는 ① 제조·수입업자의 중대사고 소비자청 보고, ② 소비자청 1차 공표 및 경제산업성(METI) 통보, ③ 경제산업성이 NITE에 사고조사 지시, ④ NITE의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보고, ⑤ 소비자청에 통보, ⑥ 소비자청의 2차 공표 및 후속조치의 절차를 취하게 된다. 한편, “비중대” 제품사고의 경우에는 ① 제조·수입업자 등의 NITE 보고, ② 사고 상황 정리 및 웹사이트 공표, ③ 특정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및 결과 공표,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기술표준원, 2011).
- 12) NITE는 유통업체로부터 거래처 기업의 제품사고정보, 당해 기업에 등록된 고객 클레임, 고장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정보 수집비용) 제품사고의 리스크 정보 추출 등을 통해 제품사고 미연 방지 대책에 활용(정책수립비용)한다. 또, 유통업자는 NITE로부터 리콜정보 및 제품의 오사용 방지를 위한 정보 등을 제공받아(결함 확인비용) 기업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위험 인지비용, 위험제품 확인비용)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기술표준원, 2011).
- 13) 1984년 PIO-NET을 개시하여 소비자상담과 협력병원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였으나(한국소비자원, 2009a), 협력병원을 통한 병원 정보는 2010년 3월 31일에 종료되었다(國民生活センター, 2011).
- 14) 소비자사고등은 i)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등, ii) 소비자가 소비자안전성을 결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i)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iii) 허위 또는 과대광고 기타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중대사고 등은 소비자사고등의 i)에 해당하는 사고 중 그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서 치료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등과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고형석, 2009; 제4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회의, 2010).
- 15) 2001년 일본 정부의 중앙성정이 체편성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행정의 슬림화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김영신, 김인숙, 이희숙, 강성진, 유두련, 2007).
- 16) 일본의 사고정보데이터뱅크시스템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청 홈페이지(<http://www.caa.go.jp/>)의 자료 참조.
- 17) 사고정보데이터뱅크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소비자청(소비자안전법에 고시된 주요사건정보), 국민생활센터 및 소비생활센터(PIO-NET 상담정보), 일본 법무성(법률지원센터의 상담정보), 후생노동성(식중독 관련 정보), 농림수산업성(오염된 식품 관련 정보), 경제산업성·농림수산업성(제품안전 관련 정보), 경제산업성의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제품안전과 관련된 사고조사에 대한 정보), 국토교통성(도시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제4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회의, 2010).

하도록 하고 있다.¹⁸⁾ 이는 법·제도를 통해 정보 소비자의 필요정보 획득비용, 개인의 위험 인지 비용과 위험제품 확인비용, 정부의 의사결정비용과 정책수립비용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3) 정보소비단계

내각총리대신은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공표를 통해 소비자 주의요구를 할

수 있고, 사업자 개선 권고 및 명령, 양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회수 등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형석, 2009).¹⁹⁾ 이 역시, 법·제도를 통해 개인의 위험 인지비용과 위험제품 확인비용, 기업의 결함 확인비용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일본의 위해정보시스템의 특징을 거래비용적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일본의 위해정보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거래비용적 해석

단계	주요 과업	세부 활동	사용자	경감 예상 거래비용
생산	사고정보수집 제도 운영 (중대사고)	민간업체 '중대사고' 보고(소비자청) 및 공표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개 인	위험 인지비용
			소 비 자	위해 원인규명 비용
		기업	결함 확인비용	
	결과 소비자청 통보 및 공표	개 인	위험제품 확인비용	
	소비자청 후속조치	정 부	의사결정비용	
	사고정보수집 제도 운영 (비중대사고)	NITE 보고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사고상황 정리 및 웹사이트 공표	개 인	위험 인지비용
		(특정 사고) 사고조사 수행	소비자, 기업	위해 원인규명 비용
		사고조사 결과 공표 및 후속조치	개 인	위험제품 확인비용
	유통업체를 통한 제품사고정보 수집	유통업체가 거래기업의 제품사고정보 등을 NITE에 제공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NITE의 위험정보 추출 및 사고방지 대책 마련	정 부	정책수립비용
		NITE가 리콜정보 및 제품 오사용 방지 정보를 유통업체에 제공	유통업체	결함 확인비용
		기업 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안전정보 신속 전파	개 인	위험인지비용, 위험제품 확인비용
정보원 관리	PIO-NET의 소비자상담정보를 통한 위해정보 수집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각 기관은 위해정보를 소비자청에 통보(소비자안전법)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유통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위해정보 통합 수집·제공(사고정보데이터뱅크시스템)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정보 공유비용
		체계적 사고 추세파악과 분석	개 인	연구자료 획득비용
		정 부	정책수립비용	
	위해정보분석·제공·전파 (소비자안전법)	위해정보 획득	정부, 개인, 기업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소비자청의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분석 및 결과 정리	정부, 개인, 기업	필요정보 획득비용
		정리된 결과의 공유 (행정기관, 지자체, 국민생활센터, 국회, 소비자위원회)	정 부	의사결정비용, 정책수립비용
소비	결함제품 조치 (소비자안전법)	결과 공표(대국민)	개 인	위험 인지비용, 위험제품 확인비용
		소비자 주의요구(공표)	개 인	위험 인지비용, 위험제품 확인비용
		사업자 개선권고 및 명령, 양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회수 등의 명령	개 인	위험제품 확인비용
기업	결함 확인비용			

18) 일본 소비자안전법 제13조 참조.

19) 일본 소비자안전법 제15조 내지 22조 참조.

3) EU의 위해정보시스템

유럽연합은 1986년 이후 EHLASS, IPP, PHP 등의 프로그램 수행에 따라 위해정보의 수집범위 및 방법 등이 변화되어 왔다. 현재는 2002년 9월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공중보건프로그램(PHP)에 의거해 EU IDB를 통해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해 신속경보시스템인 'RAPEX'를 운영하고 있다.

(1) 정보생산단계

EU는 자료의 표준화 및 통합을 통해 유럽연합 내의 위해 스펙트럼의 포괄적 관리와 회원국과 EU수준의 위해예방 목표를 달성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안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위해의 외부 원인의 국제적 분류인 ICE-CI WHO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표준데이터로 정리된 후 IDB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IDB 홈페이지). IDB 네트워크 회원들과 참여국의 목격자들에 의해 제공된 자료는 DG SANCO가 수집·관리하고, IDB 조정센터인 kfV가 자료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제도와 절차는 결과적으로 정보소비자의 학습비용, 정보 신뢰비용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보원은 국가별로 EU의 IDB병원으로 선정된 병원의 응급실 위해정보가 중심이 되는데, IDB의 자료수집 범위는 2006년 이후 가정과 여가 사고(HLA) 외에 교통, 작업장, 폭력, 자해가 포함되어 모든 위해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²⁰⁾ 응급실 위해정보 외에도 기존 국가

별 데이터시스템²¹⁾, 사망원인 통계, 퇴원 등록부, 특정 위해발생 장소별 데이터시스템²²⁾ 등을 IDB에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있다(OECD, 2010; IDB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2009a).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기관의 정보 수집비용, 정보소비자의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보유통단계

EU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주요 건강 결정요인, 특정 소비자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고위험 인구집단 등 유럽의 위해부담의 규모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고와 위해의 공동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IDB 홈페이지).

또한, 초국가적 자료의 통합과 조화, 모범사례(벤치마킹)의 보고 및 확인, 회원국 간의 비교정보 제공 등 분석정보의 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IDB 홈페이지; OECD, 2010). 이는 개인의 연구자료 획득비용, 정부의 정책수립비용, 정보소비자의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3) 정보소비단계

EU는 모든 위험한 소비자제품에 대해 RAPEX라는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을 운영함으로써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있다.²³⁾ RAPEX는 회원국 간 위

20) 유럽위해데이터베이스(EU IDB)는 수집하는 위해정보의 범위를 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해로 확대하고 유럽연합 25개국과 EFTA국가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한다(한국소비자원, 2009a).

21) IDB 참여국인 프랑스는 11개의 프랑스 병원으로부터 국내 수준의 역학과 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자체 감시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OECD, 2010).

22) 교통사고에 대한 CARE(유럽위원회 DG Tren 관리), 작업장 위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 ESAW(유럽위원회 Eurostat 관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IDB 홈페이지; OECD, 2010).

23) RAPEX는 EU 27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총 30개국에서 유통되는 위해제품정보에 대한 신속정보교환시스템이다. 회원국에서 위해제품 발생 시 관련 정보를 EU집행위에 제공하며, 집행위의 위해성 판단을 통해 각국의 RAPEX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파한다. 이후 각국의 RAPEX 담당자는 자국에서의 위해제품 존재여부 및 제재·조치내용을 RAPEX 시스템을 통해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기술표준원, 2011).

해정보의 신속한 공유, 위해상품의 공급 금지, 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제거, 리콜 등 적절한 보호 조치, 회원국에 대한 시장 감시, 집행활동의 효율성 및 일관성에 대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행위원회의 정보 수집비용과 정책수립비용, 회원국의 위해 원인규명 비용, 결함 확인비용, 정보 수집비용 등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상, EU의 위해정보시스템의 특징을 거래비용적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4) 한국의 위해정보시스템

한국의 위해정보시스템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CISS)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CISS는 소비자기본법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제3항 제1호와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하여 구축되어 전 품목의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한국의 대표적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표 7> EU의 위해정보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거래비용적 해석

단계	주요 과업	세부 활동	사용자	경감 예상 거래비용
생산	정보원 관리	각 회원국은 위해의 외부 원인의 국제적 분류 기준(ICE-CI WHO)에 따라 자료 수집	정부, 개인, 기업	학습비용
		IDB표준데이터로 정리	정부, 개인, 기업	학습비용
		별도의 기구(kfv)를 통한 자료 검사	정부, 개인, 기업	정보 신뢰비용
		IDB를 통한 위해정보 통합 수집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정부, 개인, 기업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가정과 여가사고(HLA), 교통, 작업장, 폭력, 자해 등 모든 위해 자료 수집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유통	위해정보 분석	분석정보 산출(초국가적 정보의 통합과 조화, 모범사례, 회원국간 비교정보 등)	개인 정부	연구자료 획득비용 정책수립비용
	위해정보 제공·전파	중앙 DB를 통해 정보 공유	정부, 개인, 기업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위해제품 발생시 회원국이 관련 정보를 EU 집행위에 제공	집행위	정보 수집비용
소비	신속경보 시스템(RAPEX) 운영	집행위 위해성 판단	회원국	위해 원인규명 비용, 결함 확인비용
		각국 RAPEX담당자에게 관련 정보 전파	회원국	정보 수집비용
		RAPEX담당자는 자국의 위해제품 존재여부, 제재·조치내용집행위 보고	집행위	정보 수집비용, 정책수립비용

(1) 정보생산단계

CISS는 위해정보제출기관,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핫라인 등의 위해정보 수집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수집 대상 및 범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시설물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상해, 사망사고(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한국소비자원, 2011a ; 2011b).

다양한 위해정보 수집채널 중에서는 병원 응급실정보와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정보가 9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²⁴⁾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병원·소방서 등의 위해정보제출기관²⁵⁾ 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병원 자료의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6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업무 과중과 유인 부족²⁶⁾ 등의 이유로 관련 정보가 불충분하게 입력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²⁷⁾ 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관련 제도, 인력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수집

된 정보의 정확성 검증과 추가 정보의 획득을 위한 추적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자신의 제품에 대한 결함정보를 발견한 경우 소관 부처에 이를 보고토록 하는 결함정보 보고제도²⁸⁾는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미흡으로 운영기관의 결함정보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은 운영기관의 정보수집비용, 정보소비자의 정보 신뢰비용과 위해 원인규명비용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정보유통단계

한국소비자원은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위해빈발 물품, 주요 위해유형별 동향 등을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한국소비자원, 2011a ; 2011b).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외에도 일부 정부기관이 고유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위해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²⁹⁾ 각 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공유 및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통합적인 위해정보시스템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가 각 기관의 특

24) 2010년도 CISS의 정보원별 소비자위해정보 수집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건, (%)

연도	위해정보 제출기관		소방서 (방재청)	상담· 피해 구제	소비자 직접 제공				해외 정보	국내 언론	계
	병원	소방서 (구급구조)			홈페 이지	핫라인	지방자치 단체	모니터			
2010년	28,160(64.5)		2,654 (6.1)	11,679 (26.8)	427(1.0)				634 (1.5)	75 (0.2)	43,629 (100.0)
	27,600 (63.3)	560 (1.3)			326 (0.8)	97 (0.2)	2 (0.0)	2 (0.0)			

- * 출처 : 2010년도 소비자위해정보 주요통계분석(한국소비자원, 2010a)
- * '지방자치단체 수집 건은 소비자상담센터(1372) 수집 건에 통합, 모니터는 2010년 2/4분기에 운영 중단
- 25)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위해정보제출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2011년 현재 전국의 병원 66개, 소방서 18개가 지정되어 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0-5호).
- 26)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제출기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해정보에 대해서 건 당 최대 2,7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응급실 기반의 제출 병원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2011a ; 2011b).
- 27) 이러한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 수집을 위해 의료기관에 개인 질병정보를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0년 12월 9일 최규성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헬스로그 2010.12.13차 기사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8)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참조
- 29)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손상관련 통계 취합,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 safety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식품관련 위해정보 수집,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결함조사 정보수집망, 환경부의 어린이 유해물질 함유 식품 위해정보 수집 등이 있다(한국소비자원, 2010b).

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제공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박명희, 조유현, 이심열, 2011).

또한, 자료의 통계적 타당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국가 위해 통계 등 세부 분석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의 정보 공유비용, 정보소비자들의 정보 탐색 및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의 정책수립비용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정보소비단계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정보 제공, 사업자 시정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

개선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³⁰⁾ 그러나 위해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부재는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저해하여 위해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비용과 정책수립비용, 기업의 결함제품 조치비용 등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및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현재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피해 소비자의 사후 구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비용과 조직화비용, 기업의 협상비용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 한국의 위해정보시스템의 특징 중 거래비용의 증가 요인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한국의 위해정보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거래비용적 해석

단계	주요 과업	세부 활동	사용자	증가 예상 거래비용
생산	병원 위해정보 제출	위해 경위 등 관련정보의 불충분한 입력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정보의 정확성 검증과 추적조사 미흡	정부, 개인, 기업	정보 신뢰비용
	결함정보 보고제도	기업이 자신의 제품 결함정보를 소관부처에 보고(소비자기본법 제47조)	소비자	위해 원인규명 비용
유통	분산적 위해정보 수집	정부 각 기관이 고유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수집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기관 간 공유 및 협조체계 미흡	각 기관	정보 공유비용
	위해정보 분석	국가 위해 통계 등 세부분석 미흡	정부, 개인, 기업	학습비용
소비	결함제품 조치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으로 신속한 조치 곤란	정부, 개인, 기업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연구자료 획득비용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손해배상을 위한 별도 절차 진행	개인	정책수립비용
			정부	의사결정비용, 정책수립비용
		기업	결함제품 조치비용	
		소비자	피해구제비용, 조직화비용	
		기업	협상비용	

30) 소비자기본법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2항 참조.

3. 분석 결과 :

해외 위해정보시스템의 시사점 도출

이상, 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의 거래비용 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정보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생산단계

이 단계에서는 정보소비자(정부, 개인, 기업 등)의 정보 신뢰비용, 소비자의 위해 원인규명 비용, 기업의 결함 확인비용, 운영기관의 정보 수집비용 등이 존재한다. 먼저, 정보 신뢰비용의 경우, 미국에서는 NEISS 조정관을 통한 응급실 기록의 검토 절차, EU에서는 별도 기구(kfv)를 통한 자료 검사 절차를 통해 경감을 시도하고 있다.

소비자의 위해 원인규명비용과 기업의 결함 확인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에서는 수준별 정보수집의 실시, 일본에서는 중대사고정보 수집 시 NITE의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실시를 통해 경감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영기관의 정보 수집비용의 경우, 미국은 민간업체가 위해요인 발견 즉시 CPSC에 보고토록 하고, 일본은 사고정보수집제도를 통해 민간업체가 ‘중대사고 등’에 대해 소비자청에 보고토록 함은 물론 유통업체가 거래 기업의 제품사고정보를 NITE에 제공토록 하는 조치를 통해 경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타당한 조치로는 자료검증 절차의 강화, 위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실시, 정보 수집에 있어서 민간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이 있다고 보인다.

(2) 정보유통단계

이 단계에서는 운영기관의 정보 공유비용, 정보소비자의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

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개인의 연구자료 획득비용, 정부의 정책수립비용 등이 존재한다. 먼저, 정보 공유비용과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등의 경우, 미국에서는 기관 간 협정을 통한 NEISS의 공유, 일본에서는 사고정보데이터뱅크시스템을 통한 각 기관 위해정보의 통합 수집, EU에서는 IDB를 중심으로 한 정보 공유를 통해 경감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자료 획득비용과 정책수립비용의 경우, 미국에서는 세부 연구 자료와 국가 위해 추정치의 제공, 일본에서는 체계적 사고 추세파악과 분석 실시, EU에서는 초국가적 통합 정보 및 회원국 간 비교정보 산출을 통해 경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타당한 조치로는 시스템 통합을 통한 정보 공유, 분석정보의 산출 등이 있다.

(3) 정보소비단계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위험 인지비용과 위험 제품 확인비용, 정부의 의사결정비용과 정책수립비용, 기업의 결함제품 조치비용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일본에서는 소비자안전법에서 신속한 정보분석 및 결과 공표의 규정, EU에서는 신속경보시스템인 RAPEX 운영을 통해 경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 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한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해외의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은 위해정보 단계별로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거래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외의 주요 위해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도출된 거래비용 관점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의 특징을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시사점과 국내 위해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소비자안전 정책도구로서 한국의 위해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을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V. 결론 : 함의 및 한계

1. 정책적 함의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수립한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 모델에 입각하여 국내외

먼저, 정보생산단계에서는 운영기관의 정보 수집비용, 정보소비자(정부, 개인, 기업 등)의 정보 신뢰비용, 소비자의 위해 원인규명 비용 등

<표 9>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의 시사점(거래비용 관점)

단계	거래비용	국가별 거래비용 경감 조치 사례			필요한 조치
		미 국	일 본	E U	
생산	• (정부, 개인, 기업) 정보 신뢰비용	• NEISS 조정관의 응급실 기록 검토	-	• 별도기구(kfvr)를 통한 자료 검사	① 자료 검증절차 강화
	• (소비자) 위해 원인규명비용 • (기업) 결함 확인비용	• 수준별(4단계) 정보수집	• 중대사고 수집 시 NITE의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	② 위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 (운영기관) 정보 수집비용 → 정보소비자의 각종의 거래비용	• 민간업체의 위해요인 즉시 보고(CPSC)	• 사고정보수집제도를 통한 민간업체의 '중대사고 등' 보고 (소비자청) • 유통업체가 거래기업의 제품사고정보 등을 NITE에 제공	-	③ 정보 수집에 있어 민간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유통	• (운영기관) 정보 공유비용 • (정부, 개인, 기업)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 기관 간 협정을 통한 NEISS시스템 공유	• 각 기관의 위해정보를 사고정보데이터뱅크시스템에 통합 수집	• EU IDB를 통한 위해정보 공유	④ 시스템 통합을 통한 정보 공유
	• (개인) 연구자료 획득비용 • (정부) 정책수립비용	• 세부 연구자료, 국가 위해 추정치 제공	• 체계적 사고 추세파악과 분석	• 초국가적 통합 정보 및 회원국 간 비교정보 산출	⑤ 분석정보의 산출
소비	• (개인) 위험 인지비용, 위험제품 확인비용 • (정부) 의사결정비용, 정책수립비용 • (기업) 결함제품 조치비용	•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신속한 정보분석 및 결과 공표 (소비자안전법)	• 신속경보시스템 (RAPEX) 운영	⑥ 신속 정보교환 시스템 운영

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정보 수집 비용의 경감을 위해서는 위해정보제출기관인 병원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정보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위해정보시스템 운영기관에게 결합정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업의 결합정보보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정보수집에서 벗어나 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보 신뢰비용의 경감을 위해서는 자료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위해 원인규명 비용의 경감을 위해서는 추적조사 또는 원인규명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유통단계에서는 각 기관의 정보 공유비용, 정보소비자(정부, 개인, 기업 등)의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개인의 연구자료 획득비용, 정부의 정책수립비용 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각 기관의 정보 공유비용과 정보소비자의 제공기관 탐색비용, 시스템 접근비용, 필요정보 획득비용 등의 경감을 위해서는 시스템 통합을 통한 정보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연구자료 획득비용, 정책수립비용 등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위해 통계 등 분석정보 산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소비단계에서는 개인의 위험 인지비용과 위험제품 확인비용, 정부의 의사결정비용과 정책수립비용, 기업의 결합제품 조치비용과 협상비용, 소비자의 피해구제비용과 조직화비용 등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먼저, 개인의 위험 인지비용과 위험제품 확인비용, 정부의 의사결정비용과 정책수립비용, 기업의 결합제품 조치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기관 간 신속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비용과 조직화비용, 기업의 협상비용 등을 낮추기 위해서 위해정보 사후조치

를 소비자의 사후구제 절차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즉, 위해에 대해 명확한 원인규명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소비자들을 지원(소송지원 등)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위해정보시스템의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위해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정책의 달성을 저해하게 된다. 해외의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은 위해정보 단계별로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거래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위해정보시스템은 위해정보의 단계별로 시스템 사용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유형을 확인·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2.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을 거래비용적 관점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객관적 판단의 틀을 적용하기 위해 사전에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거래비용 모델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한 분석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연구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의 특징과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 자료 및 해당 사이트 자료 등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일부 자료의 접근 또는 획득 상의 제약으로 인해 각국의 위해정보시스템의 모든 측면이 분석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종합적·체계적 자료에 기초한 후속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위해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국내외 주요 위해정보시스템을 거래비용의 틀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와 관련하여 거래비용에 입각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와 관련하여 거래비용의 관점에 입각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거래비용의 유형 정의 및 분류에 대한 일반적 기준과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12. 02. 15.

【심사시작일】 2012. 03. 08.

【게재확정일】 2012. 04. 13.

참고문헌

- 고형석(2009), 일본 소비자안전법, **법제**, 7월, pp. 14-32.
- 기술표준원(2011),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 :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로 안전취약계층이 없는 국민생활 확보, 의견조회용 검토자료.
- 기술표준원, 한국규제학회(2009), 제품안전사고 규명 절차서 및 시스템 구축 연구.
- 김영신 외(2007),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주)교문사.
- 김중석·김태윤(2004), **독립규제위원회의 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
- 노진철(2004), 개입주의 국가의 강화 : 압축적 근대화의 신호로부터 위험사회의 성찰로, **현상과 인식**, 겨울호, pp. 141-167.
- 박명희 외(2011), 식품 정보제공 사이트 분석을 통한 소비자 지향적 식품안전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4(3), pp. 1-22.
- 여차민, 김태윤(2009),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규제연구**, 18(1), pp. 207-243.
- 제4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회의(2010), 소비자위해정보의 통합.
- 지광석(2011a), **정부정책의 거래비용이론적 분석 : 규제, 소비자문제, 위해정보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_____ (2011b), **위해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 모색 : 주요국 위해정보시스템의 거래비용이론적 해석**, (사)한국제품안전학회 2011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143-157.
- 지광석, 김태윤(2010),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 **한국행정학보**, 44(2), pp. 261-289.
- 지광석, 김태윤(2011), 소비자문제의 본질과 정책적 함의 : 거래비용이론에 입각한 유형화를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5(2), pp. 57-82.
- 한국소비자원(2009a), 주요국의 소비자안전제도 및 소비자위해감시체계에 관한 연구.
- _____ (2009b), 2009년도 소비자위해정보 입력매뉴얼.
- _____ (2010a), 2010년도 소비자위해정보 주요통계분석.
- _____ (2010b), 소비자안전업무 중장기 발전방안. 내부자료.
- _____ (2011a), 위해정보 및 결합정보 업무처리규정.
- _____ (2011b), 위해정보 업무지침.
- 황준성(2000), 이행기 경제 분석에 있어 거래비용경제학의 적용, **비교경제연구**, 7(2), pp. 331-363.
- Beck, U.(1997), 홍성태 역(1997), **위험사회**, 새물결.
- Adams, J.(1995), *Risk*. 5th Impression, London: Bristol, PA. UCL Press.
- Allen, Douglas W.(1991), What are Transaction costs?, *Research in Law and Economics*, 14, pp. 1-18.
- Arrow, Kenneth(1969),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Issues Pertinent to the Choice of Market versus Nonmarket Allocation, *The PPB System*, 1, pp. 59-74.
- Coase, R. H.(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16), pp. 386-405.
- CPSC(2000), NEISS: *A Tool for Researchers*. Division of Hazard and Injury Data Systems.

- _____(2011), Publicly Available Consumer Product Safety Information Database.
- Dahlman, C. J.(1979), The Problem of Externalit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p. 22.
- Dahlstrom, R. & A. Nygaard(1999),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Ex Post Transaction Costs in Franchised Distribution Channel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6(2), pp. 160-170.
- Eggertsson, Thráinn(1994),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esinger, D. W.(1990), The Human Side of Economic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 pp. 478-499.
- Kaplan, Stanley & B. John Garrick(1981), On the Quantitative Definition of Risk, *Risk Analysis*, 1(1): pp. 11-27.
- Matthews, R. C. O.(1986), The Economics of Institutions and the sources of Growth, *Economic Journal*, 96: pp. 903-910.
- North, Douglass C.(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2010), Report on Enhancing Information Sharing on Consumer Product Safety. June(18), pp. 1-32.
- Saleh, Jahangir(2004), Property Rights Institutions and Investment,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p. 3311.
- Williamson, O. E.(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The Free Press.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
- OECD, <http://www.oecd.org>.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포털시스템, www.safetykorea.kr.
- 미국 Publicly Available Consumer Product Safety Information Database, <https://www.saferproducts.gov>.
- 일본 국민생활센터, <http://www.kokusen.go.jp>.
- 일본 소비자청, <http://www.caa.go.jp>.
- EU IDB 홈페이지, <https://webgate.ec.europa.eu/idb/index.cfm?fuseaction=home>.
- EU RAPEX, http://ec.europa.eu/consumers/dyna/rapex/rapex_archives_en.cfm.
- 헬스로그(2010.12.13), 소비자안전센터 요구시 질병정보 제공 의무화 <http://doc3.koreahealthlog.com/43014>.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Abstract ■

A Transaction Cost Theoretic Analysis of Consumer Safety Policy Tools : Case of Injury Information Systems

Jl, Kwang Seok / Kim, Tae Yoon

Recently, the safety accidents of consumer products are internationally on the increase due to the rise of international trades and the role of e-commerce. So, the interest on consumer safety is higher than ever. Because each country's standard, management method, and institution about product safety are considerably different, it's not easy for the world to draw a common standard and agreement. Therefore, each country's injury information system - the system of collecting and evaluating injury information - shows a little different aspects and characteristics.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domestic and foreign injury information systems as the policy tool for consumer safety, and reinterpret them based on "transaction cost". Then, it attempts to draw an implication and seek the ways developing the domestic injury information system. Therefore, it attempts to show which implications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 has in the analysis of consumer safety policy tool.

First,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on the definitions and types of transaction cost and the mechanism of injury information system. And, on the grounds of this, it established the framework, "the transaction cost model of injury information system us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domestic and foreign injury information systems like USA, Japan, EU, and South Korea's injury information systems, it found out that a variety of transaction costs occur to injury information system users and this hinders the injury information system from working smoothly. Therefore, this hinders the accomplishment of government policy aiming at consumer safety. Also, it confirmed that the major foreign injury information systems make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efforts for reducing the excessive transaction costs occurring to injury information system user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Korean injury information system should confirm and evaluate the type of transaction costs occurring frequently to injury information system users, and focus on seeking the diverse and appropriate ways for minimizing them. This study has the meaning in showing the comprehensive type of transaction costs occurring to injury information system users and analyzing the major domestic foreign injury information systems by the transaction cost framework. Therefore, it formed the basis for the next studies based on transaction cost about consumer safety policy tools.

Key words : consumer safety, transaction cost, risk, injury, injury information, injury information system, policy tool
